

# 대학원 건축공학과 운영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건축공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.

**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**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

**제3조 (의사결정방식)**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합의하에 개정, 수정, 시행한다.

**제4조 (교육목적)** 건축공학과와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다음) 건축공학과는 건축구조, 건설관리 및 재료시공, 건축환경 및 설비분야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 세부 분야의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. 또한, 건축의 예술-디자인적 요소와 공학-기술적 요소의 합리적인 결합능력, 새로운 건설기술과 건축재료의 개발능력, 그리고 건설산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건축 및 건축전문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건축구조, 건설관리 및 재료시공, 건축환경 및 설비 전공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교과목 및 학습방법을 개발하여 전문화된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,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.

**제5조 (세부전공)** 학과 내에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세부전공을 둔다.

## ①건축구조(Building Structure)

- 건축구조는 건축물이 안전하게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로 건물의 구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구조해석과 이를 토대로 구조물을 설계하는 구조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. 첨단기술을 교육하여 우수한 구조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설계, 시공, 환경 및 설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조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.

## ②건설관리 및 재료시공(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/Material Major)

- 최근의 건축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건설관리(CM, Construction management)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, 건축의 새로운 건설기술 및 관리, 재료의 개발능력과 건설 산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건설관리학, 재료학, 시공학 등의 학문적 능력을 배양한다. 교과과정은 건설공사의 직접 공법 및 관련 재료 연구, 건설 경영 관리 기법 등을 위주로 하며 체계적인 전문연구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건설관리·재료·시공 분야에 따른 이론 과목과 실습 과목으로 구성된다.

## ③건축환경 및 설비(Architectural Environment and Building Facilities)

-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요즈음의 건축물은 자동화, 지능화, 환경친화 되고 있고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실내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. 이 전공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설계 및 저에너지 건축물 구현기술 관련 학문적 능력을 배향한다. 또한, 건축물의 냉난방, 공기조화, 전기 및 통신, 소방, 교통(엘리베이터, 에스컬레이터 등) 등 설비분야와 건물관리 및 유지, 친환경적 생활공간 등에 관한 연구과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한다.

### 제6조 (종합학력시험 시행 및 면제)

①석사학위 과정생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평가 할 수 있는 기존 수강교과목(전임교원의 과목) 중 2개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 각 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②박사학위 과정생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평가 할 수 있는 기존 수강교과목(전임교원의 과목) 중 4개 과목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여 각 과목당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③시험 과목은 지도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도록 한다.

④종합학력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업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며 이에 충족하는 학생은 면제한다.

1.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 시 면제
2.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(교신저자, 제1저자 포함) 시 면제
3. 기타 이에 상응하는 업적으로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업적

## 제7조 (외국어자격시험 시행 및 면제)

- ①외국어자격시험 시행 및 면제는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- ②단, 본 건축공학과에서는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영어, 독어, 불어, 중국어, 일본어, 노어, 서반아어 중 선택하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8조 (논문 제출자격)

- ①석사학위 과정생 : 필요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자격시험 및 종합학력시험)을 합격한자,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업적을 쌓은 자이어야 한다.
- ②박사학위 과정생 : 필요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자격시험 및 종합학력시험)을 합격한자,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업적을 쌓은 자이면서, SCI급 논문집에 논문 100% 발표실적이 있거나 혹은, 공학분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200% 발표실적을 요구한다.(여기서 %는 지도교수는 제외하고 인정한다)

## 제9조 (석사학위 과정 선택)

- ①2학기 말 학위논문제출과 연구논문제출 중 학위취득 방법을 선택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②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으로, 작성 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(국회 및 국립도서관)에 제출하지 않는 학위논문 대체 방안을 의미한다.

**제10조 (석사학위 과정의 변경)**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. 단,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.

## 제11조 (논문의 심사)

- ①석사학위 과정생 : 1회의 공개심사와 1회의 본심사를 거쳐야한다. 공개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약 1~2개월 전(봄학기의 경우 5월초, 가을학기의 경우 11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행한다.
- ②박사학위 과정생 : 1회의 예비심사와 1회의 공개심사, 그리고 본 심사를 거쳐야한다. 예비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8~9개월 전(봄학기의 경우 9월중, 가을학기의 경우 3월중)에 시행하며, 공개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약 1~2개월 전(봄학기의 경우

5월초, 가을학기의 경우 11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행한다.

**제12조 (논문대체 심사절차)** 석사학위 과정생이 학위취득 방법을 연구논문으로 선택한 경우 본 내규에 따라 심사한다.

①1회의 공개심사와 1회의 본심사를 거쳐야한다. 공개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약 1~2개월 전(봄학기의 경우 5월초, 가을학기의 경우 11월초)에 시행하며, 본 심사는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시행한다.

②심사위원은 2인(지도교수 및 교내 전공교수)으로 정하며 합격 판정 여부는 심사위원장 우선으로 한다.

**제13조 (논문대체 제출)** 2회의 심사 결과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을 학과로 제출하며 학과에서는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도록 한다.

①표절검사결과 확인서

②연구논문 보고서 제본분(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)

③연구논문 보고서 국문 파일

**제14조** 위의 규정 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, 학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정한다.